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202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조합

피 고 [redacted]군수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5. 1.

판 결 선 고 2019. 5. 29.

주 문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286,240원, 지방교육세 928,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인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redacted]군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정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4. 13. [redacted]군 C에 건축 면적 합계 84.58㎡,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1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친 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취득세 17,286,240원, 지방교육세 928,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9.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현재도 원고는 고유업무인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정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2. 6. 13.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및 제8호는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여(제1조)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조합은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제5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제3항)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7조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는 경제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제58조 제1항),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하여 이를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정관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인 경제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영리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가) B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그런데 ① 이 사건 주유소는 조합원의 이용 비율(2012년 내지 2014년의 측정치, 이하 같다)이 56.18%에 이르고, 비조합원의 이용 비율은 36%에 불과한 점, ② 주로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경유의 매출량(1,310,952ℓ)이 휘발유의 매출량(452,623ℓ)보다 훨씬 더 많고, 경유에서 면세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43.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는 조합원들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경제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원고의 정관 제141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등의 사업(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의 이용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 비율이 높다거나 비조합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 및 과세유의 매출량이 농기계에 사용되는 면세유보다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더군다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으로 2012년 41,888,000원, 2013년 23,377,000원, 2014년 28,140,000원 3개년 합계 92,405,000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 자체의 이윤 획득이나 조합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B조합(이하 이 장에서 "B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B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B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A조합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제20조(준조합원)

① B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B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22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